

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관우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관우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98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9월 26일

발 의 자 : 이관우, 임현주, 정병기, 강수진,
정기혁, 박영섭, 김육영, 정윤주,
진선아, 이인순, 정해숙, 양순임

1. 제안이유

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·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을 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
다. 의용소방대 지원절차 등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
라. 의용소방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
마. 의용소방대 지원 중단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사전협의 : 도시안전과

라. 입법예고 : 2023. 9. 26. ~ 2023. 10. 1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·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의용소방대(이하 “의용소방대”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제3조(지원범위)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
2.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제4조(지원절차 등)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

야 한다.

1. 보조금 교부 신청서
2. 사업계획서
3.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
4.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근거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·통보해야 한다.

제5조(지도 및 감독)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에서 지원 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,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.

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 중단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,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
1.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2.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

3.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
4.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
5.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7조(포상)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·구호 활동,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